

2024. 8. 2.

강원개발공사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강원도개발공사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 비공개 대상정보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	대외비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국가공무원법 제60조) -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직무상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 등록사항, 금융 거래자료 ※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

-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함
(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 비공개 대상정보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	군 시설 건설공사(건축설계,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보상관련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보안정책,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보안을 요하는 정보
	국외개발사업 및 북한사업 추진관련 회의록, 협의문서 등
안전감사실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공사경 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	방재·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및 사람의 생명, 생활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인재지원팀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총괄처 건축사업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관공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의 설계도면
보상팀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임대아파트 해지 관련 정보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자산계약팀	분양과 관련한 계약서, 분양관련 서류 등 개인(법인)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 비공개 대상정보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정보
안전감사실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	공개로 인해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각종 위원회 운영(구성, 회의 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각종 개발계획 및 검토안 등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p>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 정부·지자체 및 타 기간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 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p> <p>공사의 건설사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및 건설사업 승인 업무에 따른 중앙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정보</p> <p>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p> <p>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p> <p>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p> <p>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p> <p>공사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 교환기록), 공사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p> <p>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p>
안전감사실	<p>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p>
기획혁신팀	<p>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p>
인재지원팀	<p>조직 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p>
	<p>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p>
	<p>노조 및 직장협의회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p>
	<p>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p>

	<p>시험관리관 선정, 시험문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p>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 객관적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p>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포상 등의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p>
자산계약팀	<p>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p> <p>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p> <p>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p> <p>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p>
자산계약팀	<p>개인 및 법인의 분양 계약에 관한 정보</p>

6

이름 ·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비공개 이유

- 현 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임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13. 2004두12629 판결)

■ 비공개 대상정보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	용지보상, 수탁사업, 용지분양, 토지거래통계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관련 정보 - 타인의 보상금 산정 내역 및 보상금액,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 등 (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 호적기재사항(이름,성별),경력활동사항(학력,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 담표), 재산상황(채권,채무관련 정보, 납세증명서) 등 - 보상과 관련한 계약서, 보상관련 서류, 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개인(법인)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 개인별 공급토지 명세서, 택지분양내역, 주택,상가,대지 계약자 내역 및 명의변경, 대출자 내역, 용지보상내역, 보상대상자 정보(보상대상자, 이해관계인, 조합원,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등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격심사평가 관련서류, 계약서 및 첨부서류, 입찰서, 내역서 등 입찰 관련 자료의 개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의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명칭의 형태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자체 청렴도 조사관련 사항 및 감사결과 등에 관한 개인정보 -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응모서류, 공사 자문위원회 인적사항 -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와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홍보팀	<p>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에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
인재지원팀	<p>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p> <p>※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p>
안전감사실	<p>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p> <p>※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2조) 및 처리정보의 열람제한(동법률 제13조)
안전감사실	<p>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p>
인재지원팀	<p>각종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p>
	<p>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p> <p>※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p>
	<p>징계관련 정보</p>
자산계약팀	<p>임대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신상정보</p>
안전감사실	<p>재난안전 관련 자문위원 개인신상정보</p>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 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	<p>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손익추정 관련자료 -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LOI, MOU, 본협약서 등) - 주택·대지·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준공원가)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 -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 - 용지공급 관련 지침 또는 내부방침 - 자산매각 및 투자유치 관련 내부 방침 및 관련 정보 -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제비용률 및 할인율 산정내역, 수지분석자료. 단, 조성공개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 - 각종 용역·공사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 입찰지정(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결과, 과업수행 결과 -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 친환경 건축물인정 신청자료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에 관련된 정보 - 위탁연구 수행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관련된 정보 - 주택 및 관광시장 정책, 동향등 마케팅 조사, 분석 등에 관련된 정보

	<p>와 판매촉진 및 홍보 전략 관련 정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영업관련 정보, 심사서류 및 심사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총 건수 및 총액의 공개는 가능) <p>※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p>정당한 이익(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 시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p>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p>
	<p>관광단지개발 등 협상 추진사항 정보</p>
<p>사업총괄처 건축사업처</p>	<p>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p>
<p>보상팀</p>	<p>용지(보상, 공급)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p>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 비공개 대상정보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정부의 토지·주택 등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운영계획 수립 자료, 투자타당성 심의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 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 자료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절차가 이행중인 정보
	주택건설 승인 심의 중 사항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 개발 사업지구,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지정고시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이전의 개발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기 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총괄사업 관리자 업무협약 및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